

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06
----------	-----

2019년 4월 29일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.3.27. 양민규 의원(찬성자 김태수 의원 외 13명)

나. 회부일자 : 2019.3.29.

다. 상정 일자 : 제28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

- 2019년 4월 29일 상정·의결(수정 가결)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).
-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.

-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 타 :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1 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위상을 높이고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음.

2 조례안 제정 필요성과 목적(안 제1조)

-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)는 의회에 대한 서울시민(이하 “시민”)의 관심도를 높이고 주요 의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의회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 중임(표-1).

<표-1> 의회 홍보대사 운영 상황

대수	홍보대사	직업	활동기간	주요 활동
7대	임성훈	MC	2009.10.30.~ 2010.6.30. (8개월)	홍보 CF 출연
	이선희	가수		-
	이 훈	탤런트		-
8대	미운영			
9대	김현욱	전 아나운서	2014.10.29.~ 2018.6.30. (3년 8개월)	홍보 광고 출연 (TV, 라디오)
	김혜진	연예인, 화가		
10대	장민우	캐나다 밴쿠버 한인회 이사장	2018.11.14.~ 2022.6.30.(예정) (약 3년 8개월)	-

- 의회 홍보대사 운영 제도는 의정을 널리 알리고 의회의 대·내외적인 위상

을 강화하는 다양한 홍보 방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, 그동안 운영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방침으로 운용함으로써 홍보 활동 기간과 범위 등이 일정하지 못한 채 상황에 맞추어 운영돼왔음.

- 따라서 의회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홍보대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된 제정안은 그 목적과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보임.
- 다만 안 제1조는 ‘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’를 조례안의 제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나, 의회 홍보대사 운영 목적이 의회와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임을 고려해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(표-2).

3 의회 홍보대사 임무(안 제2조)

- 안 제2조제1항은 의회 홍보대사의 임무를 ①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·외 활동에 관한 사항 ②의회 홍보와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③의회 주관 각종 축제와 행사에 관한 사항 ④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 ⑤이 밖에 의회 홍보를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.
- 일반적으로 홍보대사의 역할은 홍보를 위한 홍보물에 출연하거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이뤄지는바, 안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무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의회 홍보 전반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홍보대사 임무의 범위를 실질적인 홍보 역할로 좁혀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(표-2).
- 이 밖에 같은 조 제2항은 의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수행하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음.
- 이는 특정 사업을 추진할 시 이를 홍보하는데 적합한 사람이나 단체를

홍보대사로 위촉·운영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.

- 다만 특정 임무만을 수행하는 의회 홍보대사를 위촉·운영할 경우 그 임무 또는 사업 추진 기간에만 활동할 수 있도록 임기를 조정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임.

4 의회 홍보대사 위촉, 운영, 위촉 해제, 예우, 시행규칙(안 제3조~제7조)

- 안 제3조와 제4조는 홍보대사의 자격과 임기, 운영 방안을 정하고 있고, 안 제5조는 임기 중 홍보대사 해촉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.
- 의회 홍보대사가 의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시민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에 부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해 활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, 제정안에서 위촉 자격과 해촉 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6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의회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 시 필요한 예우의 범위와 근거 등을 명시하고,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제3항)으로써 의회 홍보대사 활동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.
- 한편 안 제4조는 의회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 시 담당 부서를 정하고(제1항), 매년 1회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 의회 홍보대사에게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음(제2항).
- 홍보대사의 주요 업무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고 그동안 위촉된 홍보대사가 대부분 유명 방송인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정기회의를 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바,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열어 자문을 구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(표-2).

제정안	수정 의견
<p>제4조(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<u>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4조(운영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를</u> ----- -----.</p> <p><삭제></p>

5 종합 의견

- 본 제정안은 그동안 일정한 기준 없이 위촉·운영해온 의회 홍보대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보임.
- 다만 의회 홍보대사 운영 목적이 의회와 의정을 홍보하는 것임을 조례 상에 정확히 명시하고, 임무의 범위를 실질적인 홍보 역할로 좁혀 의회 홍보대사 운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홍보대사 모두가 참석해야 하는 정기회의를 열기 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열어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,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 홍보 사업에 따라 조율해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 의회 홍보대사 운영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의회 홍보를 활성화하고 그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임을 감안해, 홍보대사 운영 담당 부서는 형식적인 홍보대사 위촉과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의정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6. 토 론 요 지 : 생략

7. 심 사 결 과 : 수정 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)

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0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4월 29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춰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의회 홍보대사 임무와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,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제정안의 목적을 ‘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향상’으로 함(안 제1조).
- 의회 홍보대사의 임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2조제1항 각 호).
- 특정 임무만을 수행하는 의회 홍보대사의 임기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 후단 신설).
-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규정을 변경함(안 제4조제2항).
-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함(안 제7조 삭제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시정” 을 “의정” 으로, “제고를” 을 “향상을” 로 한다.

안 제2조제1항제1호 중 “활동에 관한 사항” 을 “홍보 활동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작에 관한 사항” 을 “출연 등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행사에 관한 사항” 을 “행사 참석 등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.

안 제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안 제4조제2항 중 “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필요시 임시회의” 를 “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” 로 한다.

안 제7조를 삭제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<u>시정</u>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<u>제고</u>를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임무) ①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(이하 “홍보대사”라 한다)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<u>활동에 관한 사항</u> 2.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<u>제작에 관한 사항</u> 3.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<u>행사에 관한 사항</u> 4.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·협력에 <u>관한 사항</u> 5.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p>② (생략)</p> <p>제3조(위촉) ①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정</u>----- -- <u>향상을</u> -----.</p> <p>제2조(임무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----- <u>홍보 활동</u> 2. ----- <u>출연</u> <u>등</u> 3. ----- <u>행사 참석 등</u> <p><삭 제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. ----- ----- ----- ----- <p>--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3조(위촉) ① (원안과 같음)</p>

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제4조(운영) ① (생략)

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-----
----- . 다만, 제2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운영) ① (원안과 같음)

② -----
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-----
----- .

<삭제>

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①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(이하 “홍보대사”라 한다)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
2.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 등
3.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등
4.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(위촉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.

1. 의회의 위상제고 및 서울시민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
2. 의회의 경제적,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
3.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

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

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2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운영)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,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.

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5조(위촉 해제)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
3.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4.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
제6조(예우)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,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